

시설·물자 등 사용증명서

사용 제 호

소유자	성명	생년월일
	주소	전화
사용 명세	시설·물자명	
	수량	
	소재지	
	사용일	
	반환(예정일)	
	반환장소	

「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·물자 등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해양경찰청장/지방해양경찰청장/해양경찰서장
소방청장/소방본부장/소방서장

